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연구학교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연구학교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, 연구학교 대상 범위를 대안학교까지 확대하여 보다 적절성 있는 교육과정·교육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현행 연구학교의 적용대상에 대한 정의를 유아교육법·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항으로 규정
나. 적용대상을 대안학교까지 확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 당 없 음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해 당 없 음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”를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동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학교는 이 규칙에 따른 연구학교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칙에 의한 연구학교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<u>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.</u>	제2조(적용대상) ----- ----- <u>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동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728